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이상과 현실

황 경 순*

- I. 머리말
- II. 문화소유권 갈등과 공유무형문화유산
- III.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과제
- IV. 맺음말

국문초록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체재 내에서 국제 협력과 문화를 통한 평화 증진을 위하여 다 국가 간 ‘공동등재’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공동등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동등재 추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공동등재제도의 배경과 운영양상을 살핌으로써 제도적 특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의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신청의 과열과 국가 간 공유유산에 대한 갈등의 대안으로써 공동등재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사국 입장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공동등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국제협력이라는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folk9599@korea.kr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고 협약 이념의 실천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동등재 추진 당사국들에 실질적인 설명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약의 이행지침에는 공동등재의 확대와 축소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단독등재 된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간 공동등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공동 등재 이후의 보호조치를 위한 당사국의 협력은 물론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목적과 보호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한계가 보완된다면 공유유산을 매개로 한 당사국의 협력과 소통 활성화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공유무형문화유산, 문화소유권

I. 머리말

2003년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을 채택한 후 ‘무형문화유산(이하 무형유산)’과 ‘보호’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향상되었다¹⁾. 반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가 국가의 역사·문화적 위상이나 자존심과 결부되어 긴급보호목록이나 모범사례 등의 보호에 비하여 지나친 과열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등재신청에서 비롯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은 유네스코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²⁾

특히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간 긴장은 문화의 공유성이 두드러지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협약의 명확한 입장에도 협약의 결과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역 협력 증진과 국제 보호 활동이라는 협약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예방과 이미 발생한 갈등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권장하고 있다. 무형유산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초를 제공하기 2003년에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수단으로써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한 보호를 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목록’의 작성과 공표, 그리고 ‘국제원조’의 당사국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른 이러한 활동은 최고 의결기관인 협약 당사국 총회(2년마다 개최)와 6개 권역을 대표하는 24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매년 개최)를 거쳐 결정된다.

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원탁회의」,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6차 총회 참가보고서(201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6, 62쪽.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유산 보호를 크게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는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을 통해 국제협력을 이루어 평화 실현을 도모하려는 유네스코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등재의 모범사례 구축은 협약의 실천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글은 협약이 낳은 부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과열과 공유유산의 등재 때문에 빚어지는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다 국가 간의 공동등재에 주목하였다.³⁾

먼저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지침(이하 이행지침)>에 담겨있는 유네스코 공동등재제도의 취지와 운영의 특성을 짚어보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가 간 문화소유권 문제를 살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의 한 방법으로서 공동등재 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유네스코 협약의 깊이를 이해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공동체, 집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문화소유권 갈등과 공유무형문화유산

1. 문화 공유성과 공유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의 본질적 특성은 공유성이므로 서로 다른 공동체나 민족이 공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⁴⁾ 문화의 공유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3) 공동등재를 일컫는 용어로 다국가 간 등재, 다국적 등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공동등재’의 용어를 사용한다.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이 다원성

무형유산의 특징을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포괄성’, ‘대표성’, ‘공동체 기반’으로 들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공동의 소유라는 점을 ‘포괄성’⁵⁾을 통해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유무형문화유산(이하 공유유산)⁶⁾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은 협약 이행지침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무형유산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이자 주체인 ‘전승공동체’가 개인, 특정집단 또는 국가일 수 있다는 개방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무형유산이 반드시 구체적인 영토와 관련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약의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⁷⁾ 이 밖에도 직접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도 협약이 문화 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점이 국경을 초월한 공유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에 내포하고 있다.⁸⁾

요컨대 협약과 이행지침⁹⁾에 담겨 있는 유네스코의 지향은 무형유산이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소유라

과 보편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 2009, 20쪽.

- 5)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과 비슷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공유한다. 이웃마을에서 유래한 곳이든 세상 저편 어느 도시에서 전해진 것이든, 아니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른 지역에 정착한 이들이 현실에 맞춰 변화시킨 것이든 모두가 무형유산이다. 무형유산은 어떤 관습이 특정문화에 고유한 것인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센터, 『한국어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10,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14~15쪽)
- 6)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공동된 무형문화유산을 일컫는 용어로 ‘공동유산’, ‘공유유산’, ‘월경유산’, ‘다국적 유산’, ‘다국가 유산’ 등이 있다. 공동등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칭들은 영문 번역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문화의 공유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서 ‘공유유산’을 사용하기로 한다.
- 7)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앞의 책(2010), 41쪽.
- 8) “유산을 대표목록에 올린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가치성과 인식을 높이고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전 세계 문화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센터, 앞의 책(2010), 19쪽.
- 9) 협약 이행지침은 당사국 총회가 2008년에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로 2018년 현재까지 5차례의 지침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행지침은 무형유산 협약 목록, 등재절차, 국제 재정지원, 위원회 자문 비정부기구의 인가, 협약 이행 시 공동체의 참여 등을 수록하고 있다.

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유산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 지원의 의무를 당사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공동등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행지침에 등장한다.¹¹⁾ 이에 따르면 공유유산은 다 국가적으로 분포하거나 다수의 공동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무형문화유산을 뜻한다. 문화의 공유성을 고려할 때 무형문화유산의 다 국가적 분포는 무형문화유산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에서 공유유산의 공동등재는 보호활동의 세 가지 목록인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등의 등재제도가 주목해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공동등재를 통해 해당 유산이 더욱 잘 보호되고 해당 공동체 모두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면서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의 전적인 참여와 동의를 통해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정의하는 것을 전제이자 유산보호의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약은 유산이 하나 이상의 국가 영토에 존재하는 공유유산의 경우,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등재를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한정된 무형유산의 단독등재 신청을 유네스코 등재제도의 표준으로 인식하기 쉽다.

10)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센터, 앞의 책(2010), 29쪽.

1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2014)> I.5 복수국가 신청

13. 유산이 한 개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 당사국들이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복수국가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14. 위원회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지역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비롯하여 소지역 및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15.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국제원조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불균형과 문화소유권 갈등

1) 무형유산 보호활동의 불균형과 공동등재 권고

공유유산에 대한 공동등재제도는 유네스코에서의 국제적 보호 활동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약의 목표 중 하나는 ‘공동사업’을 포함한 ‘국제 협력과 원조의 제공’이다.¹²⁾ 특히 보호활동 중에서 공동등재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목록 운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0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 2차 본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협약 이행지침에는 “유산이 한 개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 있으면, 당사국은 복수국가 등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공동등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¹³⁾ 이밖에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포되었다가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협약 당사국과 협약 비당사국의 영토에 모두 존재하고 있으면, 해당 유산이 협약이 정한 모든 법적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까지도 마련해 두었다.¹⁴⁾ 또한 지역적 수준에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 연계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장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¹⁵⁾

1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5장(국제협력 및 원조) 제19조(협력) 1항 :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1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nominations when an element is found o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State Party(Nomination procedure 3).

14) 단, 협약 비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대로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협약이 정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협약 비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협약 비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다(Incorporation of items proclaim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the Representative List 41).

유네스코는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2009년에 대표목록 등재작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협약 초기에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의 국가별 신청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간 경쟁 과열 때문에 신청 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등재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¹⁶⁾ 이로 인해 협약 이행을 위한 시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다른 사업의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1년 11월에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등재심사의 총량을 연간 60건으로 제한하기로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선순위로서는 첫째 공동 등재 신청 건, 둘째 협약 목록과 모범사례 및 국제 원조 건수가 없는 국가의 신청 건, 셋째 등재 및 등록수혜 건수가 적은 국가 순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6월 파리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차 총회에서는 등재심사의 우선순위를 첫째, 등재 유산 미 보유국의 신청 건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건, 둘째 공동등재 신청 건, 셋째 등재 유산이 적은 국가의 신청 건으로 조정하였다. 같은 해인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심사 총량을 60건 이하로 결정하였고¹⁷⁾

15) 당사국은 소지역 및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하도록 관련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소가 특히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해서 연계성(네트워킹)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licable, individuals, as well as experts, centers of expertise and research institutes 84.).

16) 등재의 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등재신청 국가 간의 불균형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등재된 목록의 470건 중에서 52%에 달하는 유산이 중국, 일본, 한국, 크로아티아, 스페인, 프랑스, 이란,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서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목록 간의 불균형으로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보다 대표목록이 협약 등재 목록의 65%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유네스코에서는 많은 국가가 긴급보호목록을 국가가 해당 유산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전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대표목록에 등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7) 이 밖에 다른 이슈로 무형문화유산에서 종목(element)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떠올랐다. 신청 국가에 따라 해당 장르를 신청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특정 곡목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박성용, 「2003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

2015년에 이르러서는 심사 총량을 45건으로 제한하였다. 2016년부터는 정 부간위원회에서 심사할 목록의 심사 총량은 40건이다.

유네스코 당사국총회와 정 부간위원회를 통한 등재와 관련한 논의와 이행 지침 마련의 조치는 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가 지역 협력 증진과 국제 보호 활동의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공동등재를 권장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유네스코는 공유유산에 대한 목록 등재를 위해 공동등재 규정을 이행지침을 통해 마련하였고, 협약을 운영 하면서 점차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불균형을 공동등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에서 공동등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소유권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등재 활용

유형유산보다 무형유산이 갖는 정신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공유유산 등재 과정에서 벗어 난 문화갈등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등재신청의 과열을 빚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의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은 무형유산 단독 등재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곤 했다. 갈등의 시작은 한국이 2005년에 강릉단오제를 유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키면서부터이다. 한국의 단오는 애초 농경 의례적인 명절로 하늘과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의 단 오는 사자의례로서 위령의 의미를 중시한다.¹⁸⁾ 이러한 차이에도 한자를 차 용했다는 점과 단오 세시 가운데에 한국과 중국이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 있 으며, 자국의 단오절이 원조라고 반발한 사례이다.¹⁹⁾ 중국은 이를 계기로 유

적 보호],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2013 동아시아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 당진시청-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11~14쪽 참조).

18) 김명자, 「한중 단오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14호, 남도민속학회, 2007, 7쪽.

19) 한중 공유유산의 등재에 따른 갈등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문화 공유성 때문에 갈등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 관심을 두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단오제를 정기휴일로 추가하는가 하면 2009년 단오절을 용선축제(Dragon boat festival)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였다.

이후 한의학(중의학), 아리랑 등으로 이어지는 한중 문화갈등은 지속되었다. 2011년 5월에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중국 55개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추진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정부는 아리랑을 2012년 2월 유네스코에 등재하였다. 아리랑과 농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중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양국의 공유유산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언제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된 우리나라의 해녀문화는 일본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사례이다.²⁰⁾ 한국의 해녀문화 등재 준비와 함께 일본에서는 ‘아미(海女)’의 고향인 미에현을 중심으로 정부와 8개 현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였다.²¹⁾ 일본의 독자적 행보가 가시화되자 한국은 ‘아미’가 단독 등재될 수 있는 위기감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2015년 3월에 등재신청을 하여 ‘해녀문화’가 2016년에 등재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중일 간의 문화갈등은 오랫동안 문화유산과 문화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편 종족적·문화적·언어적 특징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국가 간의 등재 갈등도 첨예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바틱(batik)²²⁾을 대상으로 한 등

사례가 빈번해지자 2009년에는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을 채택하여 공유유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발판을 다지기도 하였다.

20) 해녀문화는 해녀의 물질 기술을 비롯해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하며 오랜 경험과 지식, 다양한 해녀공동체와 의례 등이 포함되는 무형유산으로 2012년 한국 무형유산 국가 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21) 또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여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의 언론을 공략하는 등 아미의 역사를 3천 년 전까지 앞당기며 원조임을 내세워 한국에 위기감을 주었다.

22) 바틱은 수천 개의 문양과 다양한 색을 지닌 인도네시아의 전통 섬유를 말한다. 염색 시 어느 특정 부위가 염색되지 않도록 그 무위를 왁스(wax) 혼합물로 덮는 방법을 통해 직물을 염색하고 장식하는 방법이다.

재 갈등이 대표적이다. 두 국가는 전통섬유에 전통문양으로 장식하는 염색법인 ‘바틱’의 무형유산 등재 과정에서 갈등을 낳았다.²³⁾ 바틱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은 말레이시아가 바틱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준비단계에서 부터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시화되었으며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시도된 2009년 바틱의 등재신청은 유네스코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바틱 원조 논쟁 이전부터 이슬람 종교와 언어 등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으며, 여기에 바틱 원조 논쟁이 각국의 자존심을 건 승부로 확대된 것이다.

바틱의 유네스코 등재가 결코 바틱의 기원이나 소유권을 결정하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의 주장처럼 바틱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이다. 전통사회에서 바틱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등재 이후 바틱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두 나라의 다른 사안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주제가 되었다.

이밖에도 의미의 유사성을 지닌 공동유산 등재나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형태나 의미의 유사성을 가진 무형유산인 공유유산은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재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매년 등재를 심사하는 정부간위원회 현장에서도 공유유산 등재에 대한 문제가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유유산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 갈등의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2010년에 개최된 제5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는 ‘크로아티아 마상시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터키가 해당 유산이 터키와 크로아티아 간 전쟁을 기반으로 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결국, 양 당사국 간 협의

23) 두 국가는 독립과정에서 네덜란드 식민지역은 인도네시아로, 영국 식민지역은 말레이시아로 독립하였고, 1960년대 첫 국경 분쟁을 경험한 후, 양국은 경쟁적이며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는 2000년대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한 국가의 전통예술로 널리 알려진 춤이나 음악, 연행, 의복, 음식 등을 다른 국가가 자신의 전통으로 소개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24) 김형준,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존재하는 살아있는 전통 유산 인도네시아 바틱」, 『월간 문화재 사랑』, 문화재청 홈페이지 2015.3.9.

와 신청서 내용을 심사 기간 중에 조정한 이후 등재가 확정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카즈카르 석공예’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이의제기나 ‘아제르바이잔 카펫 공예’에 대한 이란의 문제 제기도 공유유산의 등재에 따른 논란이었다.

2012년 제7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공유유산에 대한 국가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아르메니아 서사시’ 데이비드 오브 사순 공연’과 ‘아리랑’ 등재신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아르메니아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에 현재 터키 영토에 속하는 지역의 유산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과 한국의 아리랑 등재신청서에 유산의 기원 설명 부분에 북한과 중국이 마치 한국에서만 아리랑이 전승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각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현장에서 중국과 북한의 이의제기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아리랑 등재신청서를 수정함으로써 등재가 확정될 수 있었다.²⁵⁾

<아리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정부간위원회 수정사항>

구분	등재신청서 제목	등재신청서 내용
변경내용	Arirang, lyrical folk song of Korean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D) Arirang is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folk song of Korean people. It originated in the alpine heart of central Korea, among commoners around Jeongseon in the Taebaek Mountains, and spread across the country;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s its geographical location and range. Three local versions are most celeb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Jeongseon Arirang from Gangwon Province, Jindo Arirang from South Jeolla Province, and Miryang Arirang from South Gyeongsang Province.

* 수정사항 파란색 표기

이렇듯 공유유산에 대한 국가 간 등재는 유네스코 협약 체재 하에서 국가 간 갈등이 촉발되거나 외교적 갈등의 연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

25) 아리랑에 이어 2013년 제8차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한 ‘김장 문화’의 등재신청서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한이 유산범위에 대해 명확화를 요구함에 따라 종목 명칭에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삽입하여 최종 등재를 확정하게 되었다.

간위원회에서는 유산의 등재 시 다른 국가의 전승 활동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여 국가 간 존중 및 대화 증진이라는 협약 정신에 기여하지는 결정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간위원회의 회차를 거듭하면서 지속해서 공유유산에 대한 문제와 신청서 기술상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공유유산에 대한 단일국가의 신청 시 다른 국가에 대한 언급, 다른 국가를 포함하는 표현,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내용 등에 주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 간 갈등 방지를 위해 가능한 공유유산을 공동등재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등재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간 갈등은 문화소유권에 대한 당사국의 인식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은 상표 등록과 다른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특정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계유산 등재를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처럼 인식하여 국가별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소유권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물질적·정신적 유산이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 실현이라는 유네스코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이 공동등재를 통한 협력 과정에서 지역 문화의 소통이라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유네스코에서 공동등재를 권고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정부간위원회 현장에서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에서 1차로 심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이 권고사항과 등재신청서를 토대로 매해 개최되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판정이 이루어진다. 공유유산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현장에서의 이의제기 요소를 1차 심사를 거치는 평가기구에서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 심사현장에서의 공유유산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7) 허용호·이진원,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 주요 쟁점 및 향후과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현황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유산 전승실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76쪽.

Ⅲ.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과제

1. 공동등재제도 운영과 특성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한 117개 당사국이 470여 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였고, 이 중에서 공동등재는 31건에 불과하다. 단독등재 건수보다 공동등재 건수가 적지만 2011년의 제6차 정부간위원회와 2013년에 개최된 제8차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단독 등재 보다 공동등재 신청 건에 대해 심사의 우선권을 주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당사국의 협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등재 건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공동등재’에 관한 관심과 문화소유권으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 처리를 위한 방향성은 이행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행지침 변경 안건을 무형문화유산 협약 당사국(이하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개정해 오고 있다. 2008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협약 당사국 정기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행지침은 2017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를 거쳐 개정되었다. 이 중에서 공동등재와 관련해서는 1~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협약 이행지침의 공동등재 관련 조항과 내용〉

지침 개정 연도	개정 관련 회의	공동등재 조항	공동등재 내용
2010 (1차 개정)	당사국 총회 제3차 본회의 (파리)6.22-6.24	1.5 복수국가 등재신청서	13. 유산이 하나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 당사국들이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복수국가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14. 관련된 각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 <u>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은 기존에 등재된 유산을 확대된 개념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u> 해당 당사국들은 확장된 유산이 제 1절의 긴급보호목록 및 제2절의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이상과 현실(황경순)

			<p>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해당 신청서는 기 수립된 등재신청 절차와 지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새로운 등재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당 유산의 등재를 결정한 경우, 새로운 등재가 기존의 유산등재를 대체한다. 위원회가 유산을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의 유산등재는 그대로 유지된다.</p> <p>15.위원회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지역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비롯하여 소지역 및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16.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국제원조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p>
2012 (2차 개정)	당사국 총회 제4차 본회의 (파리/6.4-6.8)	I . 5 복 수 국 가 신청	<p>심사총량(약 60개)에 따른 심사대상 신청서 선정 시 다음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함</p> <p>① 등재유산 미보유국 제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서 ② 공동등재 신청서 ③ 등재유산이 적은 당사국 제출 신청서</p>
2014 (3차 개정)	당사국 총회 제5차 본회의 (파리/6.2-6.4)	I . 5 복 수 국 가 신청	<p>13. (1차 개정과 동일)</p> <p>14. (1차 개정의 15와 동일)</p> <p>15. (1차 개정의 16과 동일)</p>
		I . 6 확장 또는 축소 등재	<p>16. 18~19. (1차 개정 14~16과 동일)</p> <p>17.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이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유산의 등재 축소가 가능하다.</p>
2016 (4차 개정)	당사국 총회 제6차 본회의 (파리/5.30-6.1)		공동등재 관련 개정사항 없음
2018 (5차 개정)	당사국 총회 제7차 본회의 (파리/6.4-6.6)		

1차 이행지침 개정의 공동등재와 관련한 핵심은 특정 유산이 대표목록에 등재된 이후에도 최초 신청국을 포함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동일 유산에 대한 공동등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²⁸⁾ 이후 유네스코는 공

공동등재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공동등재 촉진을 위한 운영 지침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차 이행지침 개정에서는 심사 총량을 60개로 한정하였고, 심사 대상 신청서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제한 없이 심사되었던 공동등재 신청도 우선순위에서 2순위 밀려나게 되었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등재를 2개국 이상에서 3개국 이상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공동등재를 2개국 이상으로 정의할 경우 일부 국가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등재수량만 늘이려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²⁹⁾

3차 이행지침 개정은 ‘복수국가 신청’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나누어 구성하였고, 특히 I.6 확장 또는 축소 등재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의 등재 확장뿐만 아니라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³⁰⁾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는 어느 특정 국가에 귀속되기 어려운 무형유산의 특성과 보호를 위한 관련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협약에서 권장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국가 간의 과도한 등재 경쟁을 지양하면서 등재 활동이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의 문화 정착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유네

28) 한국은 유산의 등재 이후에 공동등재를 허용하는 규정과 함께 사전에 공동등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대표목록 등재신청 유산 예비목록을 공개해 사전 공동등재를 촉진하는 조항의 삽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 2014년에 유네스코 공동등재 사이트 <https://ich.unesco.org/en/mechanism-to-encourage-multi-national-files-00560>가 개설되었다. 개설된 지 몇 해 지났으나 현재까지 3개 공동등재 유산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 활용이 저조하다.

29) 문화재청, <제4차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보고서>, 201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확보방법으로써 공동등재가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상 다소 편하게 공동등재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등재 참여과정 속에서 협력과 소통을 거치게 됨으로써 참여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0) 현재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을 축소한 사례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일본에서 단독으로 등재시킨 대표목록에 자국의 또 하나의 무형유산을 합쳐서 등재함으로써 확대 등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가 간에 자국의 유산으로 단독 등재하였다가 이를 하나의 공동등재로 확대한 사례는 아직 없다.

스코의 공동등재제도 운영의 취지에도 국가 간 비슷한 유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유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현황(2017년 기준)>

연번	등재 연도	유산명칭	공동등재 참여국가
1	2001	자파라족 구전유산	에콰도르, 페루
2	2001	켈리드 구전유산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3	2003	발틱 노래와 춤의 축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4	2003	샤쉬마롬 음악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5	2005	벨기에와 프랑스의 축제 행렬용 거인과 용	벨기에, 프랑스
6	2005	우르틴 두 - 장가	몽골, 중국
7	2005	칸쿠랑, 멘딩지방의 입문의례	감비아, 세네갈
8	2005	쿠레 완쿠루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9	2008	가리푸나족의 언어, 무용, 음악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0	2009	탱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11	2010	매사냥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체코, 프랑스, 한국 , 몽골, 모로코,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2010), 헝가리, 오스트리아(2012),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2016)
12	2010	지중해식 식문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13	2011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의 세누포 공동체의 발라폰 관련 문화관습과 표현	코트디부아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14	2012	알 키크누다,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배두인 전통 시	오만, 아랍에미리트
15	2013	투아레그 족의 입자드에 관한 관습 및 지식	알제리, 말리, 니제르
16	2013	남성들의 콜런다트 모임, 크리스마스 풍습	루마니아, 몰도바
17	2014	오만술탄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전통 공예예술, '알 아이알라'	오만, 아랍에미리트

18	2014	키르기스 족과 카자흐족의 유르트(투르크족의 이동식 주거) 제작에 관한 전통지식 및 기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9	2015	아랍 커피, 관용의 상징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20	2015	문화사회적 공간 Majlis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21	2015	콜롬비아의 남태평양지역과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 지역의 전통음악 Marimba와 춤	콜롬비아 에콰도르
22	2015	피레네 산맥의 하계지점 불꽃 축제	안도라, 스페인, 프랑스
23	2015	전통줄다리기 놀이와 의식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24	2016	루마니아, 몰도바 전통 벽카펫 수공예	루마니아, 몰도바
25	2016	슬로바키아, 체코 인형극	슬로바키아, 체코
26	2016	노브루즈, 노우루즈, 누루즈, 나브루즈, 누로크, 네브루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 키르기스스탄, 터키, 파키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2016), 아프가니스탄(2016)
27	2016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납작한 빵 만들기과 나눔의 문화: 라바쉬, 카트리마, 주프카, 유흐카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28	2017	Kamantcheh/Kamancha 첼현악기 공예 및 연주 예술	이란, 아제르바이잔
29	2017	3월 1일과 관련된 관습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몰도바, 루마니아
30	2017	Hidrellez, 봄 축제	마케도니아 공화국, 터키
31	2017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일라노 노동 노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일부 필자 수정 및 편집)

인류무형유형유산 대표목록 470건 중에서 공동등재가 31건에 머무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등재제도는 무형유산의 공유성을 고려한 제도임에도 여러 국가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유산의 전승 영역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공동등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었거

나, 당사국이 공유유산임을 인정을 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등재신청의 의지를 보일 경우는 공동등재를 시작조차하기 어렵다. 협약에서 공동등재는 권고 사항일 뿐 공동등재를 강제하지 않기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과정은 해당 국가 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협약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동의를 중시하므로 공동등재를 강제할 의도도 없다. 이에 공동등재에 대해 유네스코가 당사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조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해당 공유유산이 한 국가에서는 주류의 문화이고 또 다른 국가에서 주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다민족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공동 등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유산은 소수인 이민자들이 전파시킨 것일 수도 있으며, 이들이 주류 사회, 출신 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맺는 미묘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유산의 등재와 보호 사업에서 정치적인 측면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유유산에 대한 국가 간의 문화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공동등재는 관련 당사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당사국에 의해 준비하는 단독등재보다 추진이 쉽지 않다.³¹⁾ 게다가 물적인적 자원 확보가 수반된다는 점은 대표목록 공동등재 추진의 큰 제약 요인이다. 국가 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더라도 다 국가 간 의견을 나눌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야 하며, 때마다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까지 등재된 유산의 협력은 주도국과 참여국으로 역할이 나누어지며 주도국에서 재원을 더욱 더 많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해당 당사국간 조정국을 선택하여 공동 등재 전략을 구상하고 완료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서열화 조장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국마다 국내 여건이 다르므로 이 또한 배려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31)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파트 7. 등재신청」,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 국가적 보호 역량 강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2017, 483쪽.

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의 확산은 속도가 빠르지 않다. 공유유산이 존재함에도 공동등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공동등재와 별개로 단독으로 등재하여 같은 유산이 별개로 취급되어 등재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³²⁾

2.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의 활성화 과제

무형문화유산은 명확한 경계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문화유산의 집합적 소유자임을 자처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³³⁾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경계를 문화의 경계와 동일 시 하므로 인해 국가 안의 문화 혹은 경계 안의 문화라는 인식은 문화의 소유권 문제와 연결이 된다. 국가가 등재의 주체로 자리 잡음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 역시 국가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등재는 적어도 해당 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소유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과 이행지침에는 유산의 등재와 보호의 주체가 공동체, 집단, 개인이며, 이들의 동의를 통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동등재의 확장과 축소 등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³⁴⁾

32) 가령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줄다리기’가 존재함에도 공동등재에 참여하지 않은 일본이 자국의 줄다리를 단독으로 등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33) 한경구,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가능발전」,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2012 무형유산보호 국제회의), 아태무형유산센터, 2012, 212쪽.

34)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2014)> I.6 확장 또는 축소 등재

16.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유산 종목에 대해,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당사국은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유산의 등재 확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신청에 따라 해당 유산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공동체,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17.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 중 해당 유산을 보유한 당사국이 관

그러나 정작 국가 간에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등재의 특성 때문에 등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국가별 공동체의 참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³⁵⁾

공동등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유사 성격의 유산에 대해 공동등재를 권고하여도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독자적으로 등재신청 추진을 원하면 개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사한 종목이 개별적으로 등재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협약의 이행지침에는 공동 등재의 확대와 축소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단독등재 된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³⁶⁾ 유네스코가 공동등재 추진을 통해 상호 간의 문화와 민족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독등재의 공동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동등재 이후 보호조치에 얼마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에서 채택된 ‘강

런 공동체, 단체,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해당 유산의 등재 축소가 가능하다.

18. 관련 당사국은 확장 또는 축소 종목에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신청서 제출은 기존 절차와 기한을 따른다.

19. 위원회가 새로운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기로 결정할 때는 새로운 등재가 기존의 등재를 대체한다. 위원회가 신규 등재 신청을 기준으로 유산을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 기존 등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35) 공동등재 신청서에 대한 심사평은 대체로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가 신청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이 참여하여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된 ‘매사냥’과 ‘줄다리기’의 심사평 역시 이에 관한 지적이었고, 공동등재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 보완기술을 하여야 했다.

36) 2018년 11월 26일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이 남북 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 3건이 다 국가 간 공동등재 건이다. 한편 북한은 아리랑, 김치, 씨름 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는 단독으로 신청했던 사안을 심사과정에서 공동등재가 확정된 건으로 이러한 공동등재 방식은 이전까지 사례가 없는 공동등재제도 운영의 새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를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³⁷⁾은 공동등재 이전과 이후에 공동등재 참여국 간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준다. 여기에는 공동 문화유산에 대한 갈등 예방과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유산 목록작성과 교육, 축제 개최 등 다국 간 공동등재 활성화 촉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등재 이후의 보호조치를 위한 협력과 함께 당사국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목적과 무형유산의 정의, 보호의 의미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본다.³⁸⁾

IV. 맺음말

무형유산의 기본적 특성이 다 국가 분포라는 현실과, 문화 다양성 보존의

-
- 37) ① 무형문화유산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며, 영토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가 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지역 차원의, 국제적 차원의 인식을 증진한다.
- ② 공유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 내 목록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 ③ 공동체 및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에 대한 교육을 증진한다.
- ④ 문화의 공유성과 공통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⑤ 유네스코의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상에 다국 간 공동등재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한다.
- ⑥ 성공적인 공동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례연구를 발굴하고 홍보한다.
- ⑦ 공동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문화교류와 기술지원을 위한 지역 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한다.
- ⑧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상 다국 간 공동등재가 문화 간 대화 및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공동등재 기준, 지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요청한다.
- ⑨ 유네스코와 밀접히 협력해 다국 간 공동등재 준비 및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⑩ 유네스코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정부단체들의 무형유산 다국간 공동등재 노력을 권장하도록 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강릉권고문」, 2009.>

- 3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문화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2012-2013 한국어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8쪽.

필요성을 고려할 때, 무형유산의 공동등재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공동 등재 과정을 통해 국가 간 문화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가 모여 다양성 존중과 상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발걸음을 옮겨갈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유네스코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다 국가 공동으로 등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공동등재제도 역시 완벽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공유유산에 따른 문화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 국가 공동 등재를 권장하는 등의 보완과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의 과열과 치열한 경쟁은 문화의 경계가 국경과 일치한다고 여기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무형유산의 본질적 특성이 공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공동체나 민족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³⁹⁾

공동등재제도의 제도적 특성에 주목한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단독등재 신청의 과열과 국가 간 공유유산에 대한 갈등의 대안으로써 공동 등재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사국 입장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공동등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고 협약 이념의 실천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동등재 추진 참여국들에 실질적인 설명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약의 이행지침에는 공동등재의 확대와 축소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단독등재 된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간 공동등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한계

39) 김현철, 신현욱, 안창현, 「동북아시아 국가 간 문화소통에 대한 시론적 연구-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민속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4, 173쪽.

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한계가 보완된다면 공유유산을 매개로 한 당사국의 협력과 소통이 활성화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더욱 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된 개별사례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과 쟁점을 도출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문화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2012-2013 한 국어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 김명자, 「한중 단오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 14호, 남도민속학회, 2007.
- 김현철, 신현욱, 안창현, 「동북아시아 국가 간 문화소통에 대한 시론적 연구-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민속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4.
- 문화재청·아태무형문화센터, 『한국어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10, 문화재청·아태무형유산센터.
- 박성용, 「2003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2013 동아시아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보고서), 당진시청·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3.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강릉시·동북아역사재단,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자료집, 2009.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
-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 2005·2010·2012·2014.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2012 무형유산보호 국제회의 자료집, 2012.
-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회고와 전망』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
- ,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원탁회의」, 『200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6차 총회 참가보고서(201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6.
- 허용호·이진원,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 주요 쟁점 및 향후과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현황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유산 전승실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출판물 제67호(2018)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s://ich.unesco.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

Abstract

UNESCO's Joint Registration System for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Ideal and Reality

Hwang, Kyeong-soon

The UNESCO recommends that countries take part in the joint registration of their cultural assets within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ulture of peace. Recently, the number of jointly registered objects has been increasing. This paper attempts to check the basis of said system and the status of its operation and propose ways of improving said system, with Korea also taking interest in the joint registration.

This paper found that joint registration functions positively as an alternative to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individual registration of representative items of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to conflicts among countries over their shared cultural heritage objects. It also found that countries use joint registration as part of their strategy of registering theirs as representative items of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hich appears to be significa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aper cites the need for a guideline that can serve as a real manual for countries taking part in joint registration to strengthen the positive functions of said system and to put the philosophy of said

convention into practice.

The execution guidelines of said convention have clauses concerning the expansion or contraction of joint registration, but there is no system that can convert individually regist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o joint registration. Not only is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Parties) necessary but also an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meaning of Safeguarding

The ultimate purpose of said system of the UNESCO, i.e., invigoration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through shared cultural heritage, is expected to be served better by supplementing the limitation of said system.

key words :

UNESCO,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list of representative items, joint registration, sh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property ownership